

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				10일
신청법인	명칭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대표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		
	금액			
	처분방법			

처분 사유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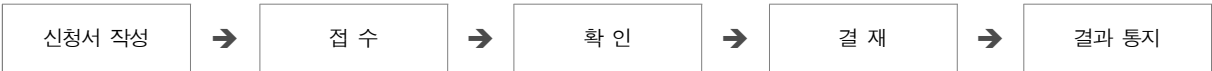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(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(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민권익위원회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 소관 부서)